



범부처 인증제도 감축, 기업의 인증부담 해소

관계부처 합동 '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' 확정

정부는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'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'을 확정·발표하였다.

- *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미래창조과학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25개 인증제도 운영 부처

오늘 확정된 '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'은 「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유사·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.

이를 위해,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타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하여 총 41개(약 30%) 인증을 2017년까지 감축한다.

- * 부처내 및 부처간 통합 사례
 - ▶ 국토부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을 "물류전문기업인증"으로 통합하여 3개 인증 감축
(①우수화물운수업체, ②우수물류창고업체, ③종합물류기업, ④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)
 - ▶ 해수부 수산물관련 8개 인증을 "우수수산물인증"으로 통합하여 7개 인증 감축
(수산물품질인증 등 8개 인증을 '친환경수산물인증' 등 3개로 통합 후 최종적으로 단일화)
 - ▶ 안행부의 '개인정보보호인증'과 방통위의 '개인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'을 "개인정보보호관리인증"으로 통합하여 1개 인증 감축
- ** 폐지 사례
 - ▶ 미래부는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폐지
 - ▶ 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 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

동시에 인증기준의 국가표준(KS) 일치화와 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, 인증 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- *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인증기준의 KS일치화 추진(14.6월 개정안 마련)으로 472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(14.12월)
- ▶ 환경부, 노동부, 국토부, 산업부가 발굴한(13.8월) 108개 중복 시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인정을 완료(14.3월)
- ** 농림부의 농산물 우수관리(GAP)인증의 경우, 기존에 '이력추적 관리제도등록', '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신청', '인증심사'의 3단계로 처리하던 인증심사절차를 "인증심사"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하여, 소요기간을 126일에서 42일로 84일 단축
- *** 조달청은 조달 업체 선정시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고, 인증의 평가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개선

또한,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.

아울러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·정비하고 인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종합적·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증통합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였다.

본 방안을 통해,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 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되고, 한국산업표준(KS)인증과 같이 사후관리 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직접적 비용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문의 ▶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(043-870-5504)

「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」 관련

I 현황 및 문제점

1. 인증제도 현황

- 인증이란 제품·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·증명
 - * 인증, 형식승인, 검정, 지정,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
- 보건·안전, 환경보호,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



보건(식품)	안전(제품)	환경보호	산업육성
			
			
〈유기농 식품〉	〈전기용품〉 〈무선통신기기〉	〈건축물〉	〈태양광〉 〈풍력〉

-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
 - * 의무인증 : 안전·보건 등과 관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
 - ** 임의인증 :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으로 인센티브(우선구매 등) 부여
- 현 209개 법정인증제도(의무 70개, 임의 139개) 운영 중(25개 부처, 124개 법령)

〈부처별 인증제도 현황〉

연번	소관부처	등록 인증수	유형		연번	소관부처	등록 인증수	유형	
			의무	임의				의무	임의
1	산업통상자원부	34	14	20	14	기상청	3	1	2
2	국토교통부	34	15	19	15	안전행정부	3	1	2
3	해양수산부	24	8	16	16	조달청	3	0	3
4	농림축산식품부	20	3	17	17	공정거래위원회	2	0	2
5	환경부	15	10	5	18	방위사업청	2	0	2
6	산림청	13	2	11	19	중소기업청	2	0	2
7	미래창조과학부	11	2	9	20	관세청	1	0	1
8	식품의약품안전처	7	4	3	21	교육부	1	0	1
9	문화체육관광부	7	3	4	22	국가정보원	1	0	1
10	소방방재청	7	4	3	23	농촌진흥청	1	0	1
11	보건복지부	7	0	7	24	방송통신위원회	1	0	1
12	고용노동부	5	2	3	25	여성가족부	1	0	1
13	해양경찰청	4	1	3		합계	209	70	139

* [출처]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에 각 부처가 등록한 자료(2014)

2. 문제점

- 기업에 부담이 되는 임의인증 급증
 - 임의인증은 2000년 대비 330% 증가
 -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위해 다수 인증 획득
- 유사·중복 인증으로 현장애로 가중
 - 동일품목에 유사인증을 추가로 받는 불편
 - ▶ 사례) 물류기업대상 우수화물운수업체 등 4개 유사인증 운영 중(국토부)
 - 인증기준 상이, 과도한 인증절차로 인증 비용 증가
 - ▶ 사례) 전자파적합성 인증기준이 상이하여 중복시험(미래부 등 8개 부처)
-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체계 미흡
 - 인증제도 신설 또는 기존 제도의 존속·개선 여부를 종합적·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

〈법정 인증제도 수 연도별 변화〉

구분	2000	2010	2014	증감 (2000년 대비)
임의인증	32	98 (206% ↑)	139 (42% ↑)	330% ↑
의무인증	40	57 (43% ↑)	70 (23% ↑)	75% ↑
계	72	155 (115% ↑)	209 (35% ↑)	190% ↑

- 「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(14.3.20)」에서 인증으로 인한 기업 애로 호소
(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이사)
- △ 제품마다 유사한 여러 인증 획득, △ 인증마다 고가의 비용 소요

II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

1. 기존 인증제도 정비

- (임의인증 통합) 임의인증제도 139개 중 41개(약 30%) 감축
- ① 유사인증 간 통합 : 23개(개별부처 20개, 부처 간 3개)

예시)	구분	현행	개선
	품질	① 물류표준설비인증, ② 지능형 로봇품질인증, ③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(이상 산업부), ④ 순환골재 품질인증(국토부), ⑤ 목재제품 품질인증(산림청)	KS인증에 통합
	물류	① 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, ② 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, ③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, ④ 종합물류기업인증(이상 국토부)	물류전문기업인증 으로 통합

- ② 실효성 상실 인증은 폐지 : 12개
예시) 연구관리우수기관(미래부),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인증(산업부/국토부) 등
- ③ 국제적으로 민간자율 인증은 민간 전환 : 6개
예시) 품질경영체계(ISO 9001), 환경경영체계(ISO 14001) 인증 등



■ (비용·시간 절감) 인증기준 일치화, 심사절차·인증품목 최소화

① 인증기준의 국가표준(KS) 일치화 및 상호 인정

- * 인증기준 DB 구축('14.12월) 후 KS일치화 여부 및 유사·중복 전면 검토('15.6월)
- 「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 도입 방안」(14.5.8 국가정책조정회의)과 연계 추진

② 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및 대상품목 축소

- * 시험통합, 구비서류 감축, 신고절차 간소화(3→2단계) 등
- **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 대상 품목 축소(45→40개) 등

③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 최소화

- *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 허용, 인증가점 축소 등('14.9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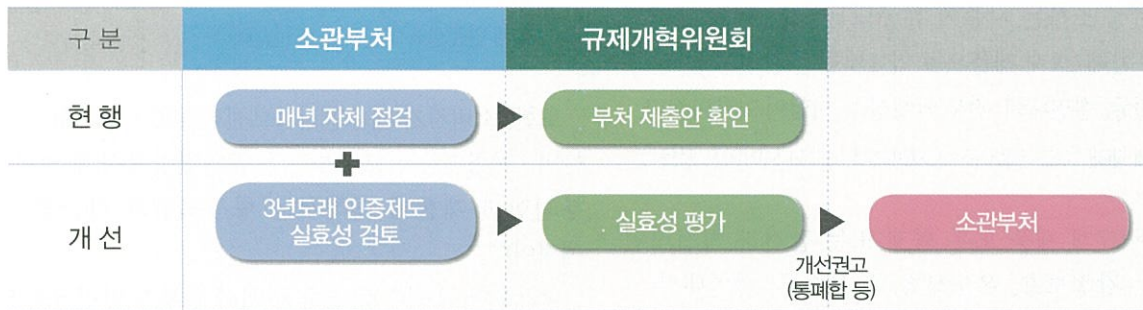
2. 신규 인증 제한 및 관리 강화

■ (신규인증제한) 규제영향분석서에 “인증제도” 관련항목을 추가하여 신규 인증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

- 인증품목·기준 및 절차 등을 심층 분석하여 유사·중복 방지
- 신규 인증 도입시 기존 인증 정비 병행
- * 행정규제기본법 개정('14. 12월) 및 「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」개정('15.2월)

■ (사후관리) 부처별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존속 필요성 등 3년마다 제도 실효성 검토 의무화

- * 인증제도 실효성 평가지침 마련('14.12월)



3. 인증제도 관리시스템 구축

■ (국가인증통합시스템 구축) 모든 인증 정보를 통합·관리('14.12월 시범운영)

- 인증 정보 현황, 인증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온라인 양방향 창구로 활용

■ (인증콜센터) 인증정보 제공, 불편사항 건의·개선하는 오프라인 소통공간으로 인증·표준 콜센터(1381, '14.3월) 활성화